##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1 발의연월일: 2021. 7. 5.

발 의 자:한병도·김병주·김민철

한준호 • 이형석 • 강준현

윤호중・강선우・허 영

김민석 · 김성주 · 홍기원

신현영 · 김성환 · 이수진

이수진(비) · 도종환 · 이학영

유정주 · 김승원 의원

(20일)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

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게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기 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도록 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수 없도록 한계를 정함(안 제86조제2항).
- 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다.
- 1. 체계심사의 범위: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
- 2. 자구심사의 범위: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

제8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이유 없이 회부된"을 "회부된"으로, "120일"을 "50일"로,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를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

한"을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로,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
	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다.
	1. 체계심사의 범위 : 법률안 내
	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
	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
	2. 자구심사의 범위 : 법규의 정
	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
	<u>률용어를 정비하는 것</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u>4</u>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u>이유 없이 회부된</u> 날부터 <u>120</u>	<u> 회부된50일</u>
<u>일</u>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	
안의 소관 <u>위원회 위원장은 간</u>	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
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 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 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 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 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 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